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186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	---

1.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 적용기한 연장(정일영의원안, 최수진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장철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정부안, 최기상의원안) 3
2.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수도권 밖의 학교 출신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시 상향된 공제액 적용(장철민의원안) 8

I. 개요

1.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18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철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7. 1.

(3) 회 부 일 : 2025. 7.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면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반 상시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년세대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채용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수도권 밖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

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 세액공제 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고용 여력을 제고하고 지역인재의 지역일자리 취업 및 지역 정주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 적용기한 연장(정일영의원안, 최수진 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장철민의원안, 최은석 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정부안, 최기상의원안)

현행		개정안		
○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적용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 ○ 고용지원대상: 상시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본공제 - <u>개정안별 공제율 상이</u>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대기업
	수도권	지방	(3년 지원)	(2년 지원)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 사후관리: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적용기한 - <u>2025. 12. 31.</u>		○ 적용기한 - <u>2027. 12. 31.(한병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윤영석의원안)</u> - <u>2028. 12. 31.(윤준병의원안, 김정호의원안, 최수진의원안, 장철민의원</u>		

현 행	개정안
	안, 최은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2030. 12. 31.(박정하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최기상의원안) ○ 시행일 - 2025. 1. 1. (윤준병의원안, 김정호의원안) - 2026. 1. 1.(박정하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최수진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장철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정부안)

* 박정하의원안 2024. 6. 20. 발의(의안번호 702), 윤준병의원안 2024. 7. 22. 발의(의안번호 2065), 김정호의원안 2024. 9. 5. 발의(의안번호 3666), 정일영의원안 2025. 1. 22. 발의(의안번호 7695), 최수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50), 한병도의원안 2025. 2. 28. 발의(의안번호 8592), 김주영의원안 2025. 3. 18. 발의(의안번호 9046), 장철민의원안 2025. 7. 1. 발의(의안번호 11186), 최은석의원안 2025. 7. 28. 발의(의안번호 11780), 추경호의원안 2025. 8. 12. 발의(의안번호 12138), 윤영석의원안 2025. 8. 21. 발의(의안번호 12284),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최기상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767)

□ 개정안은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및 윤영석의원안은 기본공제의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안, 김정호의원안, 최수진의원안, 장철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및 정부안은 기본공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정하의원안, 정일영의원안 및 최기상의원안은 기본공제의 적용기

한을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기업의 채용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유인을 제공하며, 세제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인 고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통합고용세액공제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26년에는 총 4조 6,340억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득세	10,761	13,524	15,917	18,523	19,976
법인세	18,814	22,379	22,190	24,564	26,364
합계	29,574	35,903	38,107	43,087	46,340

주 1)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2) 기존 고용지원 세액공제 실적을 포함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실적 집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둘째,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양한 재정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용 지원 사업 현황]

대상	사업명	사업내용 및 편성현황
근로자	지역고용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

대상	사업명	사업내용 및 편성현황
	촉진지원금	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 (대규모기업은 1/3) 최대 1년간 지원 - 2025년도 예산: 59억원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취업애로청년 등 채용 후 6개월 고용 시 사업주 월 최대 60만원(최대 720만원) 지원 - 2025년도 예산: 10만명 지원분(7,772억원 편성)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고용장려금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2025년도 예산: 75.6만명 지원분(3,774억원 편성)
고령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 2025년도 예산: 357억원 편성
경력단절 여성	고용유지장려금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지급(월 80만원, 최대 24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해당 기업에 고용유지장려금 지급(80만원) - 2025년도 예산: 정규채용 후 12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에 고용유지장려금 추가지급(80만원)

셋째, 기업 규모별 또는 소재지별 공제액 변화의 차이를 이용한 분석결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확대가 상시근로자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장기적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 종료를 목표로 축소 연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¹⁾

기획재정부 역시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

1)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 9.

특례」 결과²⁾를 근거로 기업의 신규채용 의사결정에서 세제혜택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 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고용을 확대한 기업을 사후적으로 지원하고 있을뿐 신규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넷째, 기업이 고용 관련 조세지원을 항구화된 제도로 인식할 경우 조세특례 제도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³⁾

한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안마다 3년 또는 5년의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2) 수혜기업 심층면담시 기업의 채용 의사결정시 신규채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할 급여 등 비용적 측면을 고려할 뿐, 사전적으로 세제지원 제도를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3)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 9.

2.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수도권 밖의 학교 출신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시 상향된 공제액 적용(장철민의원안)

현행					개정안																																														
○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적용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 ○ 고용지원대상: 상시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수도권 밖의 학교 출신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시 상향된 공제액 적용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tr><tr><th colspan="2">중소(3년 지원)</th><th rowspan="2">중견 (3년 지원)</th><th rowspan="2">대기업 (2년 지원)</th></tr><tr><th>수도권</th><th>지방</th></tr><tr><td>상시근로자</td><td>850</td><td>950</td><td>450</td><td>-</td></tr><tr><td>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td><td>1,450</td><td>1,550</td><td>800</td><td>400</td></tr></table>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tr><tr><th colspan="2">중소(3년 지원)</th><th rowspan="2">중견 (3년 지원)</th><th rowspan="2">대기업 (2년 지원)</th></tr><tr><th>수도권</th><th>지방</th></tr><tr><td>상시근로자</td><td>850</td><td>950</td><td>450</td><td>-</td></tr><tr><td>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td><td>1,450</td><td>1,550 (2,325)</td><td>800 (1,200)</td><td>400 (600)</td></tr></table>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수도권 밖의 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종퇴·재학·휴학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괄호 안의 1인당 공제액을 적용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1,450	1,550 (2,325)	800 (1,200)	400 (600)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1,450	1,550 (2,325)	800 (1,200)	400 (600)																																															
○ 적용기한: 2025. 12. 31.					○ 적용기한: 2028. 12. 31.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장철민의원안 2025. 7. 1. 발의(의안번호 11186)

□ 개정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대상 중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기존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액의 1.5배를 적용하려는 것임.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우대공제는 청년정규직이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적용되며 고용증가인원 1인당 수도권 중소기업은 1,450만원,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1,550만원이 적용되며, 중견기업은 800만원, 대기업은 4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지방 소재 학교 출신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할 경우 1인당 2,325만원, 비수도권 중견기업은 1,200만원, 비수도권 대기업은 600만원의 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서 수도권 밖의 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할 경우 기존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액 대비 1.5배 높은 공제액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지방 소재 기업으로 하여금 지방 소재 대학을 졸업한 인재를 채용할 경제적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대학의 소재지역에 따른 취업률 격차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24년 12월 발표한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비수도권(68.5%)보다 3.7%p 높은 72.2%로, 전년도 격차(2.7%p)보다 1%p 증가하였음.

[지역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p)

구분		졸업자	취업대상자	취업자	취업률
2023	수도권(A)	319,022	270,537	195,357	72.2
	비수도권(B)	327,040	283,744	194,311	68.5
	차이(A)-(B)	△8,018	△13,207	1,046	3.7
2022	수도권(a)	240,351	202,030	143,788	71.2
	비수도권(b)	317,688	277,543	190,121	68.5
	차이(a)-(b)	△77,337	△75,513	△46,333	2.7
2021	수도권(a)	233,571	196,949	137,382	69.8
	비수도권(b)	315,724	276,393	183,303	66.3
	차이(a)-(b)	△82,153	△79,444	△45,921	3.5
2020	수도권(A)	231,580	195,908	130,771	66.8
	비수도권(B)	321,941	284,241	181,659	63.9
	차이(A)-(B)	△90,361	△88,333	△50,888	2.9
2019	수도권(A)	227,265	194,841	133,764	68.7
	비수도권(B)	323,089	286,758	189,274	66.0
	차이(A)-(B)	△95,824	△91,917	△55,510	2.7

주: 수도권-비수도권 취업률 차이(%p): ('16)1.6 → ('17)2.1 → ('18)2.2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연도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2022년 한 해를 제외하면 매년 수도권 소재 대학과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취업률 차이가 확대되어 왔음.

개정안은 비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 청년 인력을 고용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취업률 차이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둘째, 지방 소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 51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 소재 기업으로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력 확보(50.5%)’가 선정되었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과제 중 2번째로 필요한 중점과제로 ‘대폭적인 조세 감면(38.4%)’이 선정되었음.

지방 소재 기업의 인력난 문제는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수도권 선호 현상까지 겹쳐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및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게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대기업에게 지역인재를 채용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⁴⁾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자를 30% 이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이전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30.0%(2022년도 이후부터)

상 채용해야 함.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⁵⁾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⁶⁾로 채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의 35% 이상을 지역인재 중에서 채용할 경우 자금 조달이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둘째,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우대조치가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시행하는 경우
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홍보 및 취업알선
2. 융자 및 투자, 자금 조달
3. 판로·기술개발·인력·수출
4. 그 밖에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 제1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퍼센트를 말한다.

6) 단, 지역인재의 범위를 해당 이전지역의 지방대학으로 제한하지 않음.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청년등상시 근로자가 증가할 경우 현행 최고 수준인 1,55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상시근로자가 증가할 때에도 수도권 내의 지역보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공제하고 있음⁷⁾.

셋째, 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보다 최대 775만원 더 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청년에게 취업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청년의 경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취업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신 학교가 수도권에 위치

7)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정서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한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154
